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고용노동부에 청년정책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(별정직 6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「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」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2. 9. 00. 공포·시행)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고, 청년고용기획과장의 분장사무에 청년 관련 정책 자문기구의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2. 9. 2. ~ 9. 7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조의2제10항에 제1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3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영 지원

별표 5 중 총계 “617”을 “618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장관 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별표 6 중 총계 “636”을 “637”로 하고, 별정직 계 “4”를 “5”로 하며, 장관 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 1 다음에 “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 1”을 신설한다.

부 칙

이 규칙은 2022년 9월 20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조의2(통합고용정책국) ① ~ ⑨ (생 략) ⑩ 청년고용기획과장은 다음 사 항을 분장한다. 1. ~ 13. (생 략) <u><신 설></u> 14. (생 략) ⑪ · ⑫ (생 략)	제6조의2(통합고용정책국) ① ~ ⑨ (현행과 같음) ⑩ ----- -----. 1. ~ 13. (현행과 같음) <u>13의2. 「청년기본법 시행령」</u> <u>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</u> <u>청년 관련 정책자문기구의 운</u> <u>영 지원</u> 14. (현행과 같음) ⑪ · ⑫ (현행과 같음)

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5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본문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17</u>	<u>618</u>	+1
·	·	·	
·	·	·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·	·	·	
장관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	1		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·	·	·	
·	·	·	

[별표 6]

고용노동부 공무원 정원표(제23조제1항 단서 관련)

직 급 별	현 행	개정안	증 감
총 계	<u>636</u>	<u>637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
별정직 계	<u>4</u>	<u>5</u>	+1
•	•	•	
장관정책보좌관(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)	1		
<u>청년정책 담당(6급 상당)</u>	<u><신 설></u>	<u>1</u>	+1
•	•	•	
•	•	•	